

	<h2 style="margin: 0;">학술활동 지원 지침</h2>		규정번호	3-1-44
			제정일자	2007.04.01
			개정일자	2012.08.01
			개정번호	Ver.5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본 대학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,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술지에 발표하도록 하여 깊이 있는 학문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) 학술활동지원은 본 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한하며, ‘전임교원임용규칙’ 제4조 1항의 일반 교원에 한한다.

제3조(지원조건) ① 게재 논문은 논문형식을 갖추어야 하며, 논문에는 반드시 우리대학 소속임이 명시된 논문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②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결과물(논문)에 한한다.

③ 공동발표인 경우 논문의 제1저자(first author)나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 라고 표기된 경우만 인정한다.

④ 긴급투고 시 학회 규정에 명시된 기본(일반) 심사료, 게재료를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논문) 지원대상 논문은 국내 저명 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)나 SCI급 학술지(SCI, SSCI, A&HC, SCI-E, SCOPUS, Index Medics 등재학술지)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신청 시 유의사항) ① 지원금에 대한 입금 의뢰인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이어야 한다.

② 논문은 원본 또는 별쇄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반드시 논문(별쇄본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게재당시 학술지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신청인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(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지원신청서, 해당 영수증 원본 또는 카드영수증, 논문별쇄본) 산업기술연구소에 제출한다.

제7조(지원액)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한다.

제8조(신청기간) 게재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~ 12월31일 사이의 논문에 대해 다음해 1월에 신청기간을 공고한다.

제9조(지원비 지급) 예산의 범위 내 신청 분에 대한 지급은 매년 1월말에 일괄 지급한다.

- (1) (개정) 이 지침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2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